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61
----------	------

제출일자 : 2022. 12. 6.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 가. 지역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들에게 보육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돕기 위하여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됨에 따라 시설운영의 방향과 역할 등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민들에게는 시설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나. 장난감 도서관의 장난감 대여료를 무료로 전환하고, 휴무일을 조정하여 주말에도 개방을 함으로써 시설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영유아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장난감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를 규정한 【별표】를 조정코자 함.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1) 「영유아보육법」 제7조, 제26조의2
 - (2)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 제13조
 -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나. 예산조치 : 2023년 본예산(안) 15억 원 반영

다.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2. 10. 7. ~ 10. 27.)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 추계서 : 따로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을 제5장(제27조부터 제39조까지)으로 하고, 제31조제2항(종전의 제25조제2항), 제32조제2항(종전의 제26조제2항) 및 제33조(종전의 제27조) 중 “별표”를 각각 “별표1”로 하며, 제5장(제34조부터 제35조까지)을 제6장(제40조부터 제41조까지)으로 하고, 제6장(제36조부터 제37조까지)을 제7장(제42조부터 제43조까지)으로 하며, 제4장(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를 별표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며, 별표2 및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보육실 등을 둘 수 있다.

제22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 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적 상담 등의 업무를 위한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치료사, 행정원 등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은 군수가 임명한다. 다만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의 대표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센터의 장 및 소속지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대표는 그 임명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학부모 대표, 보육전문가, 그 밖에 보육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 하여야 하고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사무의 위탁협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설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별표2가 정하는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납부한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100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
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9. 「국국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50 %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 50%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13. 세자녀 이상 가정 : 50%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이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1]

○ 장난감 도서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제32조제2항, 제33조 관련)

구분	내용	비고
연회비	일반회원 10,000원	회원등록일부터 1년간
	시설회원 20,000원	
휴무일	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이용시간	10:00 ~ 19:00	입·퇴관시간
이용료	무료	장난감도서관 내·외 불문
대여수량	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장난감 최대2점, 도서 최대2권	1회 기준
	시설회원 장난감 최대5점, 도 서 최대5권	
대여기간 및 연장 기간	7일(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	

○ 물품등의 배상 기준(제31조제2항 관련)

종류	구입 시기 등	배상금액
장난감 및 도서	3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9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8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70%
	12개월 이상 2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60%
	20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전	구입가격의 50%
장난감관리봉투	대	1,000원
	중	500원
장난감 이름표	500원	

[별 표 2]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및 대여료 등(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비고
교육실 대관료	시간당 최대 20,000원	○ 보육과 무관한 목적의 대관은 불가 ○ 1시간 미만 사용이라도 1시간 사용으로 봄
프로그램 수강료	무료프로그램, 유료프로그램 구분 유료프로그램 수강료 : 1일 최대 30,000원 참여 재료비 : 1일 최대 20,000원(수강료와 별도)	

[별 표 3]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및 대여료 등 반환(제26조제1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금액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전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액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50%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4장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설치) 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영유아에게 법 제26조의2에 따른 일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교육실 등을 두며,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놀이공간, 보육실 등을 둘 수 있다. 제22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시보육 서비스의 제공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4.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5.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대한 상담 및 컨설팅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8.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9.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10.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23조(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심리·정서적 상담 등의 업무를 위한 상담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경우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치료사, 행정원 등 그 밖의 보육교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은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탁기관의 대표가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센터의 장 및 소속직원으로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 대표는 그 임면 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주요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	--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성별 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보육교직원, 학부모 대표, 보육전문가, 그 밖에 보육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센터장은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⑥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달성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위탁운영 등)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운영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사무의
--	---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하여야 하고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센터 운영사무를 위탁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수탁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센터 운영사무의 위탁협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기관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기관이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
--	---

	다고 판단된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협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수탁기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해지를 원하는 경우 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6조(시설 사용료 등)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별표2가 정하는 범위에서 납부하게 할 수 있고, 납부한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반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3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한다. ②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대여료 등을 다음 각 호의 비율로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 100 %
--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배우자 : 50% 5. 「5·19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50%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0%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50% 10.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50% 11.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 50%
--	---

	1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50%
	13. 세자녀 이상 가정 : 50%
	1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50% 이내
제4장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21조 ~ 제24조 (생략)	제5장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 ~ 제30조 (현행과 같음)
제25조(회원의 의무) ①(생략) ② 회원이나 회원이 감독하는 물품 등의 이용자가 물품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1조(회원의 의무)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u>별표1과</u> -----.
제26조(연회비)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별표]와 같다. ③ ~ ④ (생략)	제32조(연회비) ① (현행과 같음) ②----- <u>별표1과</u> ----- -----.
제27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료, 물품 등의 대여수량 및 대여·연장기간은 【별표】와 같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 ----- ----- ----- <u>별표1과</u> -----.
제28조 ~ 제33조 (생략)	제34조 ~ 제39조 (현행과 같음)
제5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6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34조 ~ 제35조 (생략)	제40조 ~ 제41조 (현행과 같음)
	제7장 보칙

제6장 보칙

제36조 ~ 제37조 (생략)

[별 표]

○장난감 도서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제26조제2항, 제27조 관련)

구분	내용	비고
연회비	일반회원 10,000원	회원 등록일 부터 1년간
	시설회원 20,000원	
이용시간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 부터 금요일까지 10:00부 터 17:30까지	입·퇴관시간
이용료	장난감 1점당 500원 도서 1권당 300원	장난감 도서 관 내·외 불문
대여수량	일반회원 장난감 최대2 점, 도서 최대2권	1회 기준
	시설회원 장난감 최대3 점, 도서 최대3권	
대여기간 및 연장기간	7일(1회에 한해 7일 연장 가능)	

○물품등의 배상 기준(제25조제2항 관련) (생략)

<신 설>

제42조 ~ 제43조 (현행과 같음)

[별 표 1]

○장난감 도서관 이용시간 및 이용료 등(제32조제2항, 제33조 관련)

구분	내용	비고
-----	-----	-----
휴무일	공휴일, 매주 일요일, 월요일	입·퇴관시간
이용시간	10:00 ~ 19:00	
이용료	무료	장난감 도서 관 내·외 불문
대여수량	일반회원 미취학 자녀 1명당 장난감 최대2점, 도서 최대2권 시설회원 장난감 최대5 점, 도서 최대5권	1회 기준
-----	-----	

○물품등의 배상 기준(제31조제2항 관련) (현행과 같음)

[별 표 2]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및 대여료
등(제26조제1항 관련)

구분	내용	비고
교육실 대관료	시간당 최대 20,000원	○보육과 무관한 목적의 대관은 불가 ○1시간 미만 사용이라 도 1시간 사용으로 봄
프로 그램 수강료	무료프로그램, 유료프로그램 구분 유료프로그램 수강료 : 1일 최대 30,000원 참여 재료비 : 1일 최대 20,000원(수강료 와 별도)	

<신 설>	[별 표 3] ○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및 대여료 등 반환(제26조제1항 관련)	
	반환 사유	반환금액
	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되었을 경우	전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액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을 한 경우	전액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	50%

□ 영유아보육법

제7조(육아종합지원센터) ①영유아에게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의2(시간제보육 서비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2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한다.

제13조(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①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 1의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교육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 교육
 9.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는 관할지역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 특성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 ①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및 영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보육 관련 법인·단체 등은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지·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대표자의 경력사항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법인·단체 등의 보육 관련 업무실적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단체 등의 조직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서류
7. 향후 5년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예산서를 포함한다)

1. 사업개요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원이 예정됨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을 편성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2. 비용 발생 요인

달성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개원

3. 관련조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례(안)
제21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인 건 비 : 500,000천원(상시 근로 인력 : 10명)
- 사 업 비 : 230,000천원(보육관련 교육 및 컨설팅사업 등)
- 운 영 비 : 20,000천원(공공요금 및 수용비 등)
- 시 설 비 : 750,000천원(리모델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등)

나. 추계 결과 : 1,500,000천원 정도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예산 1,500,000천원 정도

5. 연도별 비용추계표 : 불 임

6. 작성자 : 교육정책과 보육팀장 김준홍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	2차년도 (2024)	3차년도 (2025)	4차년도 (2026)	5차년도 (2027)	계
세 입		1,500,000	975,500	1,024,275	1,075,488	1,129,262	5,704,525
지 방 세		1,500,000	975,500	1,024,275	1,075,488	1,129,262	5,704,525
의존재원		-	-	-	-	-	-
세 출		1,500,000	1,393,500	1,463,175	1,536,333	1,613,149	7,506,157
인 건 비		500,000	525,000	551,250	578,812	607,753	2,762,815
사 업 비		230,000	798,000	837,900	879,795	923,784	3,669,479
운 영 비		20,000	20,500	21,525	22,601	23,731	108,357
시 설 비		750,000	50,000	52,500	55,125	57,881	965,506
재원 조달		1,500,000	975,500	1,024,275	1,075,488	1,129,262	5,704,525
의존 재원	소 계	-	418,000	438,900	460,845	483,887	1,801,632
	국 비	-	268,000	281,400	295,470	310,243	1,155,113
	시 비	-	150,000	157,500	165,375	173,644	646,519
자체 수입	소 계	1,500,000	975,500	1,024,275	1,075,488	1,129,262	5,704,525
	지방세	1,500,000	975,500	1,024,275	1,075,488	1,129,262	5,704,525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	-	-	-	-	-
기 금		-	-	-	-	-	-
특별회계		-	-	-	-	-	-
균 비		1,500,000	975,500	1,024,275	1,075,488	1,129,262	5,704,525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	-	-	-	-	-

